

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과정

- 가. 제출일자: 2022. 11. 10.
- 나. 제 출 자: 서구청장
- 다. 검토기간: 2022. 11. 11. ~ 11. 18.(8일간)

2. 근거법령

- 가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
- 나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의 선정(안 제2조~제6조)
- 다.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(안 제7조)
- 라.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(안 제8조~제11조)
- 마.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2조~제22조)
- 바.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(안 제23조~제24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9일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인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치 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, 청소년의 육성·보호,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,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의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며,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, 기부금액의 30%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, 또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과 고향사랑 상품권 제공으로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